



구 분		
열람·서명자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성명 노승용 (서명)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성명 지준연 (서명)
확 인 자	정보공개담당관	성명 김순희
작 성 자	정보공개담당관 행정7급	성명 이희준

## 2023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23. 11.

**정보공개담당관**

(정보공개팀)

# 「 2023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 〈회의개요〉

- ◆ 일 시 : 2023. 11. 6.(월) 16:30 ~ 17:29
- ◆ 장 소 : 영상회의
- ◆ 참 석
  - 심의위원 : 정남철, 전다운, 노승용, 지준연
  - 배 석 : (간사) 정보공개팀장, (서기) 이희준 주무관
- ◆ 안 건 : 이의신청 4건
  - (2023-72)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요청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결과 알림
  - (2023-73)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관련 보완조치계획서 검토 요청
  - (2023-74) : 고덕강일지구 오수처리관련 노선계획(안) 자문회의 결과보고
  - (2023-75) : 서울시 은평구 갈현 1구역 재개발 수용재결 신청현황
-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2023-72) : 기각 - 비공개
  - (2023-73) : 기각 - 비공개
  - (2023-74) : 기각 - 비공개
  - (2023-75) : 기각 - 비공개

**【 의안번호 2023-72 이의신청, 73 이의신청 】**

**안건명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요청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결과 알림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관련 보완조치계획서 검토 요청**

<000 위원>

첫 번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72호, 의안번호 제2023-73호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소관부서 담당자께서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주무관>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지원과 담당자 000입니다.

<000 위원>

제가 이번 첫 번째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질문 몇 가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작성된 공문인데 사업부서에서 주신 의견으로는 이게 아직도 계획 진행 중인 사업이다라는 이유로 비공개 의결을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이 리모델링사업 진행 현황이 어떠한지 그거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0 주무관>

설명드리면 이게 2015년도에 리모델링조합 설립이 완료가 됐고요.

그 이후에 2016년도에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이후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리모델링 허가라든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기 전에 사전자문이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 절차에서 나왔던 의견을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아직 완료가 안 됐고 현재까지도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해야지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상당히 오래된 정보라서 이게 마치 종료가 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요. 아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 사유는 사전자문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에 대한 조합의 수용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보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개발기본계획도 확정이 안 된 상황인가요? 그거는 지나서 도시계획위원회로 가는 거 맞나요?

<000 주무관>

현재는 개발기본계획이 폐지가 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도 기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는 여전히 똑같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자문 도시계획위원회의 내용이 지금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000 위원>

그런데 같은 지구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문건은 개발기본계획, 정비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뭔가 진행하셨던 자문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러면 이 개발기본계획이 폐기돼서 다른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이 됐다면 그러면 이것은 이미 다 종료된, 이미 폐기된 계획에 대한 문건이라 봐야 하지 않는지요.

<000 주무관>

아파트지구보다는 그 계획이 옛날 아주 오래된 법령에 근거해서 수립된 정비계획이다 보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구단위계획은 폐기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지구가 폐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파트지구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변경이 돼서 승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이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트지구가 폐지됐다 하더라도 똑같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지구단위계획 내용 안에 그런 내용들, 즉 아파트지구에서 준수해야 됐던 내용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준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변경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추가적으로 또 거쳐야 되니까요.

<000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상황, 진행 중인 절차에서 나온 의견과 동일하다는 거는 사실 외부

인이 알 수 없는 사정이고요. 이거는 개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 주신 의견인데 이게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비슷한 의견이 지금도 개선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전혀, 이미 변경된 다른 계획에 대한 의견인데 이게 어떻게 아직도 진행 중인 절차에 관한 문서라고 볼 수 있을지 해석이 계속 의문스럽습니다.

<000 위원>

아파트지구가 폐지됐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서 똑같이 그 내용을 승계받아서 진술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보류가 계속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이 어차피 똑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돼야 사업계획 추후의 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지구가 폐지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것을 정보공개해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은 여러 명의 주민들이 조합원이 돼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도 많고, 반대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검증되지 않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계획이 외부로 유출됐을 때는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악용할 우려도 있고요. 조합원들 간에 결정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오해나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외부에 공개됐을 때 압력이나 회유가 있어서 업무 추진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000 위원>

혹시 그러면 이 개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진행 중인 소송이나 형사 수사절차 이런 게 있을까요?

<000 주무관>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주체가 돼서 하는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사인 간의 그런 쟁송까지 다 알고 있지는 못 하거든요.

<000 위원>

그러면 혹시 주무관님, 이 자료가 공개되어서 아까 비공개 사유에 지금 5호를 언급하

셨는데 8호에 보면 부동산 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공개될 경우예요. 이 정보가 공개되면 그럴 우려도 있습니까?

<000 주무관>

네. 8호도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꾼들이 마치 이게 사업이 지금 담보상태에 있는데 이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서 마치 사업이 되는 것처럼 그런 광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됐다든지 이런 거짓정보로 악용을 해서 부동산의 투기를 이렇게 유도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런데 검토하실 때 왜 8호는 언급을 안 하셨지요?

<000 주무관>

8호도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일단 저희가 봤을 때 5호로도 내부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다 내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요 내용만, 비공개 사유만 언급을 했습니다.

<000 위원>

지금 72호 안건을 먼저 의결하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곧바로 000 위원님께서 다음 안건을 진행을 한 다음에, 서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결정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73호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000 위원>

73호 안건도 72호 안건의 연장선인데요.

여기 뒤에 첨부되어 있는 조치계획, 그다음에 뒤에 경관시뮬레이션 검토서가 같이 첨부되어 있어서요. 여기 보면 지금 조치내용 같은 경우가 세 차례에 걸쳐서 제일 많이 심의 자체가 보류된 부분이 상가 부분, 이전 소유주 자체들의 반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도 보면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주무관님께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이 부분도 비공개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앞보다는 더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000 주무관>

상가 부분의 존치로 인해서 도시계획적 도로 확충에 대한 부분이 충족이 안 되고, 그게 수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이 경관이라는 부분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추진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 목이 충족이 안 되면 가 목의 경관시물레이션 자체도 사실 확정되지 않은 정보이고, 이게 변경될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공개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이 됐어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똑같이 거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파트지구가 폐지됐다 하더라도 이걸 연속선상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00 위원>

작년 2022년 12월 12일에 결국은 그 허가신청 처리기간을 연장하셨잖아요. 연장된 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12월 12일 허가신청 처리기간을 연장했는데, 그러면 지금 2017년부터 시작된 허가처리 결과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한없이 계속 말씀하신 그 상가하고 도로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언제까지 처리가 될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네요?

<000 주무관>

네,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가 돼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2개 층을 위로 수직으로 증축하는 내용으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검토사항입니다. 여기 추진경위에 보시다시피 안전성 검토결과도 지금 부적합하다고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충족되지 않은 내용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해결이 돼서 경관 부분이라든지 건축배치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변경이 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외부에 공개가 됐을 때는 조합원들 간에

오히려 오행이나 분쟁이나 부동산 악용 그런 부작용이 많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결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것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입장하신 것 같습니다.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이 공문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가장 큰 사유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안전성검토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투명성이 남아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계획들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일정이 혹시 뭐 로드맵이라든가, 회의가 지금 문제가 있으면 사업을 스톱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 뭔가 회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이 있는지 이게 확정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이걸 미뤄둘 수는 없는 건데요.

<000 주무관>

일단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 주체가 민간조합이다 보니까 저희 행정청에서 이 부분을 취소할 하거나 무효를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2018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보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리모델링 허가신청을 했고, 그 이후에 2019년도에 심의가 다시 한번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리모델링 허가신청 처리기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안전성검토 결과가 부적합으로 2021년도에 판단이 됐고요. 2023년도에 이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조합에서 했습니다.

<000 위원>

조합의 지금 어떤 반응을 계속 보면서 지금 대응은 하는데 조합 측에서 뭔가 어떤 액션이 나와야 서울시도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인가요?



지금 조합 설립은 된 거지요? 인가도 받은 거 아닙니까?

<000 주무관>

조합 설립돼 있습니다.

<000 위원>

그거는 당연히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를 가지는 건데, 그거를 그냥 민간에 맡겨놓고 있다고 그냥 행정청으로서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는 조금 저는 이해는 잘 안 되거든요. 이 청구인이 조합원인 거는 맞습니까?

<000 주무관>

개인정보라서 저희도 정확하게 알아볼 수는 없었는데 조합 측하고 구청에다 제가 우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는 조합원은 맞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이해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000 주무관>

이해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조합 측에서는 현재 상가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찌 됐든 상가가 도로를 지금 침범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협의가 돼야 어쨌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000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여기 조합원이나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서, 객관적인 상황을 조합으로부터 공지나 해명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도 가능할 수 있는데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오해도 살 수 있고 투명하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설명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답변도 보면 진행상황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저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깐 그 점이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지요?

<000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신청했다가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또 조합에서 이의신청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의신청에 대한 서울시의 처분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언제 나가는 것이지요.

<000 주무관>

그거는 리모델링 허가도 마찬가지로 2차 안전성검토에 대한 결과도 지금 조합에서 구청에다가 신청을 해서 인허가권자인 구청이 판단을 할 사항이고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 서울시에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택법에 보면 조합원이 주택조합에다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해당이 된다고 하면 조합에서 판단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서는 도시계획 절차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5호 사유로 비공개를 하려면 그 진행 중인 절차가 종료될 때 공개한다라는 결정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언제 끝난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좀 드러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건과 관련된 절차가 무엇이고, 그게 왜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게 언제 종료된다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면 5호 사유를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게 공개될 경우에 왜 매점·매석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보충의견을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 주무관>

일단 이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통과, 가결 여부를 최종 결정되는 걸 판단해서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일단 보류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혹시나 부동산이나 이런 투기세력들한테 이런 것들이 잘못 악용될 수 있다는 내용은 워낙에 요즘에 투기세력들이 지능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도를 저희가 따져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치계획에 대한 부분도 이게 마치 통과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000 위원>

질문이 없으면 일단 주무관님 잠깐 나가 계시고 저희가 심의의결한 다음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000 위원님부터 72호 안전에 대해서 의견 주시지요.

<000 위원>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종료된다고 해서 이게 같이 공개될 문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연동된 문서가 아닌, 도시계획위원회 절차에 관한 문서가 아니어서요.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가 종료되면 같이 공개할 절차문서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5호 적용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되게 막연하고요. 그래서 8호 여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위원님들 먼저 의견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000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부처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명쾌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위치가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고, 비공개 사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이게 아직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저희가 이걸 공개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자문내용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프로세싱에 그대로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어떤 의결을 위해서 자문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자료는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불리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공개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치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건축이 일부 진행된 곳도 있는 것 같기

는 한데, 정확하게 제가 그 상황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도 부동산 8호도 같이 함께 만약에 비공개를 한다면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제 의견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분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님.

<000 위원>

저도 상당히 지금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비공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73호 관련해서는 너무 구체화되어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되게 악용될 소지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이 비공개가 된다 그러면 72호도 같이 비공개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저도 세 분이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런데 5호를 하면 저희가 그러면 언제 공개한다 그거를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000 위원>

일단 확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면 그거를 그대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도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이 부분에서 일단 의견을 주고, 추후에 만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또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때 만약에 정보공개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한번 더 판단할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진행된 바가 없으니까, 당연히 현재는 우리로서도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고 공개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만약에 뭔가 진행이 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이 있고, 그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고 싶어서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그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심의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확정이 된 거를 기준으로 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세 분이 비공개 결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주무관님 일단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저희가 의결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모두 제72호, 제73호 이의신청건에 대해서 5호와 8호 사유로 비공개, 기각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72호, 의안번호 제2023-73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무관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합에 연락해서 진행사항에 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사항을 이 신청자한테 안내를 해 주시고, 또 조합 측에도 필요한 정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공개하는 방안을 설명해서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 의안번호 2023-74 이의신청 】

안건명 : (물재생계획과-14673) 고덕강일지구 오수처리 관련 노선계획(안) 자문회의 결과보고

#### <000 위원>

그다음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74호** 물재생계획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소관부서 담당자께서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주무관>

물재생계획과 000 주무관입니다.

#### <000 위원>

먼저 고덕강일지구 관련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하시겠어요?

#### <000 주무관>

고덕강일지구 사업은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SH공사에서 고덕강일지구 공공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서울시랑 계속 협의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이 오수처리시설 관련한 것은 언제쯤이나 이렇게 결정이 나고 확정이 되고 그럴 것 같으세요? 앞으로의 일정.

<000 주무관>

저희가 SH공사랑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업무협약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아마 내년쯤에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사전에 미리 알려지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청구인에게 어떤 특정 이익이 생기거나 그런가요?

<000 주무관>

특정 이익보다는 아직 내부검토 과정에 있고, 업무협약안에 서울시랑 SH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원래는 SH공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어차피 목적물은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걸로 그런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금 협약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사업비에 대한 분담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그걸 조금 더 협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000 위원>

저 간단한 질문 있는데요. 그러면 대안2로 가겠다는 내용도 업무협약에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그때 확정되는 내용인가요?

<000 주무관>

그것아직 아직 협의가 조금 덜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000 위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일단 주무관님은 잠깐 나가 계시고 저희가 의결하고 다시 연

락드리겠습니다. 000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000 위원>

이거는 들으신 대로 진행과정에 있는 부분이고 해서요. 5호에 따라서 저는 기각 의견을 드립니다.

<000 위원, 000 위원>

저도 의견으로 대안1도 있고 대안2도 있고 기타의견도 있고, 또 안에서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기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000 위원>

저도 기각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주무관님 들어오라고 해 주십시오.

저희 의결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입니다. 본 안건 기각 결정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74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번호 2023-75 이의신청 】**

**안건명 : 서울시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수용재결 신청현황 공개요청**

<000 위원>

**의안번호 제2023-75호** 토지관리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소관부서 담당자께서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팀장>

토지관리과 수용재결팀장 000입니다.

<000 주무관>

토지관리과 수용재결팀 000 주무관입니다.

<000 위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000 주무관>

이 사건은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수용재결 신청한 소유자 수에 대해서 공개 요청을 하신 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자 및 관계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비공개처리하고 있어서 비공개처리한 건입니다.

<000 위원>

지금 이의신청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재결신청서 이 내용이지요?

<000 주무관>

네. 재결신청 내용은 공개 요구하지 않으셨고요, 그냥 숫자만.

<000 위원>

여기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수를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겁니까?

<000 주무관>

맞습니다.

<000 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재결신청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거는 보상액과 그리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이거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정비조합의 경우에 경영상 이익은 어떤 부분, 조합 경영상 이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000 주무관>

네. 저도 숫자 정도는 알려줘도 된다고 생각은 했는데요. 솔직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비공개처리를 했고요. 일단 조합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조합의 의견도 듣는 거는 중요한데요. 이 조합의 이런 명칭, 주소나 고시 사항 이런 건 다 나간 거잖아요. 상관이 없고, 소위 말하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수



용재결을 신청한 사람들이 누군지에 관한 정보가, 또는 숫자가 공개됨으로써 이게 개인정보나 또 조합의 경영상 이익이 침해되는 게 무엇인지가 명확하지가 않고, 또 수용재결신청을 한 이 숫자만으로 부동산 투기로 연결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 지금 숫자가 아주 많거나 진행상황을 충분히 추론해 가지고 이게 뭔가 개발과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로 연결되거나 또 조합이 이걸 가지고 뭔가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그런 것보다는 지금 아마 진행상황 정도만 알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숫자만 알려주는 게 크게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 몇 명, 관계인 몇 명 이 숫자만 알려줘도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다 공개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요. 여기 인적사항 중에서. 그렇지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해서 나머지 이름, 주소는 다 지우고 숫자만 공개하는 게 문제가 될지 그걸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 <000 팀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수용재결팀에서는 소유자나 우리 관계목록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청구인이 어떠한 의도로 우리한테 이거를 요구하는지 그 자체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 <000 위원>

물론 주관적인 의도야 알 수는 없지만요.

저희가 지금 주관적 의도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문서 중에 숫자만 알고 싶어하는데, 이게 지금 비공개 대상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요. 그 사람의 의도는 지금 여기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공개되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가지고 있는 문서에서 재결신청서가 있는데 여기 보통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신청하는데 그것도 대표자 명의만 있고 그 외에는 숫자거든요.

그러면 이 대표자 이름하고 주소는 다 가리고 숫자만 나가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숫자 정도는 크게, 제가 보기에에는 공개를 해도... 비공개 사유에 명확히 해당이 된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만약에 공개됐을 때 그 과장이라든가 비공개 사유가 되는 사유를 소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 데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 <000 주무관>

저도 숫자 정도는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은 했는데, 애매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우리가 수용재결을 하다 보면 보상금 자체가 굉장히 큰 금액이 많이 나가고 이렇게 돈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항상 이분이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청구를 했는지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이 많고요.

#### <000 팀장>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집값들이 많이, 땅값들이 많이 비싸잖아요. 비싸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과연 이 청구인이 소유자나 관계인에 속해 있다면 조합에 다 청구를 해도 무방한데 굳이 우리한테 이렇게 청구하는 거 보면 뭔가 조합원과 조합과 이분이 어떠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것으로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비공개했던 것 같습니다.

<000 위원>

그런데 대부분 조합에서 잘 안 알려주려고 하겠지요. 조합원이 신청하거나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니깐요.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거로는 그런 우려는 있지만 지금 비공개 대상과 관련해서는 좀 명확한, 이걸 공개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다소 좀 불안한 점이 있어서 비공개로 하셨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대충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000 위원>

저 두 가지만 여쭙보고 싶은데요.

이 재결신청서가 9월에 들어왔는데 이거 결정이 났나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000 주무관>

이게 보통 접수일로부터 4개월이나 6개월 정도 걸리는 과정이고요. 아직 약간 문제가 있어서 열람공고는 안 내린 상태고, 그냥 접수만 된 상태입니다.

<000 위원>

그러면 저는 5호 진행 중인 절차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제3자 의견서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누구의 대리인인지가 안 써 있어서요. 이게 조합 대리인인가요?

<000 주무관>

네.

<000 위원>

또 다른 질문 없으신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잠깐 나가 계시고 저희가 의논한 다음에 의결한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을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주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 사안인데요. 다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진행 중인 상황과 연결이 될 우려가 있을지 그거는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저로서는 일단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소유자명하고 주소, 그다음에 신청한 보상액 이거는 당연히 비공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계인 여기 이름하고 주소 이거 제외하고 숫자 정도만, 그리고 나머지 일 반적인 사항만 부분공개를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님.

<000 위원>

애매하기는 한데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 부분만, 이렇게 숫자 정도만 해서 부분공개하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000 위원>

이게 앞 건이랑 약간 반대되는 취지여서 고민이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재결절차가 진행 중인 게 너무 명백해서,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저도 크게 위험한 정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진행 중인 절차가 있어서 저는 비공개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000 위원>

비공개로 보면 5호인가요?

<000 위원>

네, 5호로. 그리고 지금 이게 재결신청서고, 재결결정이 안 난 상황이고 심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5호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그 점이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요. 재결신청을 해 둔 상황이라 지금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아직 재결이 내려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부처에서 주장했던 비공개 사유보다는 비공개한다면 오히려 5호가 더 관련성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000 위원님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저도 지금 수용재결이 아직 나온 게 아니라서요. 이게 그냥 단순히 숫자를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시에, 이게 아마 어느 정도 숫자를 얘기하면 추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인지. 그런 위험성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결과 나오기 전에 단순 숫자라고 하더라도 공개하는 거는 좀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000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기각 의견으로 해서 비공개를 하도록 하고, 000 위원님도 아까 의견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저도 아까 그 부분을 놓쳤었는데요. 위원님들과 같은 의견으로 저도 기각 의견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공개 사유를 저희가 지금 5호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저쪽에서 지금 부처에서 주장한 거는 관련성이 없고, 5호로만 정리해서 가겠습니다. 소관부서 담당자님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저희 의결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에서 주장한 비공개 사유는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 숫자 정도와 관련

해서 지금 비공개 사유 세 개는 문제는 안 되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서울특별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상황이지요? 그래서 아직 재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 중인 사항으로 해서 비공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75호**는 “기각” 비공개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사유는 저희가 5호로 정리하겠습니다.